

인천지방법원 2023. 9. 27 선고 2022가단26795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

담당변호사 오정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8. 9.

판 결 선 고 2023. 9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. 4. 15. 접수 제1260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. 4. 15. 접수 제126090호로 채권최고액 3천만 원,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)가 피고 앞으로 경료되었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5. 24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)가 경료되었다.

다. 피고와 D은 C의 자녀이고, 원고는 D의 시어머니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이 사건 근저당은 피담보채무의 성립 없이 경료된 무효 또는 허위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(일부)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, 갑제2호증, 갑제3호증, 갑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이 허위라 보기 부족하거나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부양료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나, 갑제2호증, 갑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지영

